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 목 대학 내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내

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과 관련하여 대학에 설치된 ‘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’에 해석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
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‘산학협력단’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대학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 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임
 -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총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
 - 산학협력단 업무담당 직원은 대학본부 파견 교직원, 대학본부에 소속을 두고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, 대학 총장의 업무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

?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? 제25조(산학협력단의 설립·운영)

-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- ② ~ ③ <생략 >
-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.
- ⑤ ~ ? <생략 >

?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? 제24조(산학연협력계약)

-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.

※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직종별 매뉴얼(p.16) Q&A 자료(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 요청)

- Q.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,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?
 ☞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끝.

수신자: 고등교육기관전체, 대학법인

주무관 **신소연**

행정사무관 **이흥복**

전결 10/21

민원조사담당관 **이병석**

협조자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7688 (2016-10-21)

접수 대학특성화사업센터-00022 (2016-10-21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074 전송 044-203-6093 / sinso1209@moe.go.kr / 공개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